

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246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.

나. 「서울시 기후테크 펀드」 조성을 위하여 기 출자동의(제326회 임시회) 받은 모태펀드 연계방식의 운용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외 일반기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고, 펀드 운용 관리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,

서울시 주도 펀드로 운용형태를 변경하고, 출자규모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 변경개요

○ 출자규모 : 10억원

- (기존) 20억원 → (변경) 10억원

○ 조성목표 : 15억원

- (기존) 200억원 → (변경) 15억원

▶ 서울시(20억원), 모태펀드, 민간출자자 → 서울시(10억원), 민간출자자

나. 필 요 성

-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육성 필요
-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·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
- 일반기업 투자비율을 줄이고,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자금 지원 외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 도입 필요

3.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

가. 추진방향

-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·육성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펀드 운영
-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
-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,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
 -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운용사를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
 -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

나. 출자금액 : 10억원

- 출자재원 : 기후대응기금

다.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

- 펀 드 명 : 기후테크 펀드
- 조성목표 : 15억원
 - 서울시(10억원), 민간출자자
- 조성형태 :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
- 투자대상 :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
 -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원 이하 기업에 펀드 총 결성액의 70% 투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①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,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○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

제59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·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·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,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

제23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,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·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금 예산 반영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복혜진 (☎ 2133-3586)